

의안번호	제40호
의결 (보고)	2018.08.23. (제13회)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제출자	총무과장
제출연월일	2018.08.21.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 제정이유

- 파주시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 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안 제5조)
- 다.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 규정(안 제6조~제7조)
- 라.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0조)
- 마.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4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77조, 「공무원연금법」 제25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3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반영(별첨)

- 입법예고 기간 : 2018. 7. 31 ~ 8. 20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파주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 공무원으로서 파주시 및 파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속”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 적용 기간을 말한다.
5.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노조전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파주시의원과 파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청원경찰
2.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6개월 미만 제외)
3. 공중보건의 및 공익수의사
4. 시장이 제8조에 따른 파주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4.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외 연수
6. 모범공무원 등 소속 직원의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7. 직원 애사(哀事) 시 상조물품 지원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정년· 명예퇴직공무원의 격려품 제공(의례적 수준의 기념금품)

10. 직원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

11.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지역의 경제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 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무과 ☎ 940-4184
입안자	총 무 과 장	김 영 준
	후생복지팀장	임 공 빈
	담 당 자	김 태 환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 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구 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제10조 (회의)	<p>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0조(회의) ①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 참고자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정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4.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외 연수
6. 모범공무원 등 소속 직원의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7. 직원 애사(哀事) 시 상조물품 지원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정년·명예퇴직공무원의 격려품 제공(의례적 수준의 기념금품)
10. 직원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
11.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수	33	23	29	40	50	175
기존 소요예산	165	115	145	200	250	875
추가 소요예산	66	46	58	80	100	350
총 소요예산	231	161	203	280	350	1,225

※ 기존 : 1인(공무원 본인) → 변경 : 2인(공무원 포함 배우자 등 가족 1인 동반)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각 해당연도의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인원수 기준 포상금 편성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총 소요액	231	161	203	280	350	1,225
포 상 금	231	161	203	280	350	1,225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 후생복지팀장 임공빈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231	161	203	280	350	1,225
포 상 금		231	161	203	280	350	1,225
세 출		231	161	203	280	350	1,225
포 상 금		231	161	203	280	350	1,225
재원 조달		231	161	203	280	350	1,225
자체 수입	소 계	231	161	203	280	350	1,225
	지방세수입	231	161	203	280	350	1,225

□ 관련부서 협의 및 심사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28			
정책명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김태환	전화번호	031-940-418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7월 2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이유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은 파주시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이 안은, 공무원이 아닌 파주시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후생복지의 범주를 확대하고(제3조제1항 및 제3항)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여(제4조제2항) 평등하고 공정한 분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의 균형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둬으로써(제8조 내지 제9조) 양성평등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이 조례안 분석평가항목 점검포인트에서는 '③ 3-1. 성별균형참여: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를 제외하고는 성별 구분,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참여(3-2 및 3-3), 성별통계 등에서 모두 '아니오'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함.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p>□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과 관련하여 분석평가서 분석평가항목 ② 성별특성(제·개정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음. ▪ 검토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3항(적용범위)와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가 비공무원인 직원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제2조제1호의 '소속 공무원'에 포함되지 아니 하더라도,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근로자)을 포함 하는 것으로 봄. ☞ 조례의 적용 범위에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비공무원인 직원 등을 포 			

합한다면, 모든 후생복지는 평등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 원리에 비추어 타당함. 만약 복리후생의 적용을 소속 공무원만을 중심으로 규율한다면, 비공무원인 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비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또는 동일한 수준의 조례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 더구나, 제4조제2항은 후생복지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평한 배분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적용 대상에 비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복지혜택은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적용대상 전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함.
2. 이들 문제는 비공무원인 직원의 성비에 따라 제6조(후생복지시설) 및 제7조(후생복지사업) 등에서 특히, 여성에게 결과적, 구조적 차별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됨
- ☞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공무원이나 파주시 등에 종사하는 직원 등의 성비에서 여성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라면, 파주시의 복리후생규정은 비공무원인 자들(특히, 여성)에 대해 결과적, 구조적인 차별을 야기하는 것일 수 있음.
 - ☞ 예를 들어, 제6조 및 제7조 등에서 규정하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표면적으로는 공무원 여부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비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라면, 이는 사회적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넘어 성차별로 이어지게 됨.
 - ☞ 조례안에 따르면, 비공무원의 여성 성비가 높다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구분하여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더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 따라서 비공무원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여지를 차단할 수 있음.
 - ☞ 다만, 이러한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이 조례에서 비공무원인 자에게도 동일한 후생복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② 비공무원인 자에 대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후생복지를 규정하는 별도의 후생복지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함.
 - ☞ 아래에서는 ①의 경우를 상정하여, 대안을 제시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2. ‘직원’이란 이 조례 제3조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 및 제7조 등에서는 ‘공무원’과 ‘직원’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제3조(적용범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파주시의원과 파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소	제3조(적용범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회와 파주시에 근무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에서 차	「헌법」 제11조제1항 “평등권”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1.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

		<p>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p>	<p>별받지 아니한다.</p>	<p>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행위” 사회적 신분 및 고용 형태에 따른 후생복지 등에서의 차별을 방지함.</p>
<p>3</p>	<p>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모든 직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4</p>	<p>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p>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4.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외 연수 6. 모범공무원 등 소속 직원의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p>(소속, 장기근속, 모범,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소속, 장기근속, 모범,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직원</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46 185 526 981">연수</td> <td data-bbox="526 185 798 981"> 7. 직원 애사(哀事) 시 창조물품 지원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정년· 명예퇴직공무원의 격려품 제공 (의례적 수준의 기념금품) 10. 직원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 11.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td> <td data-bbox="798 185 1066 981"></td> <td data-bbox="1066 185 1366 981"></td> </tr> </table>	연수	7. 직원 애사(哀事) 시 창조물품 지원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정년· 명예퇴직공무원의 격려품 제공 (의례적 수준의 기념금품) 10. 직원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 11.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연수	7. 직원 애사(哀事) 시 창조물품 지원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정년· 명예퇴직공무원의 격려품 제공 (의례적 수준의 기념금품) 10. 직원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 11.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p>	<p>2018년 7월 31일 까지</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07월 30일</p> <p style="text-align: center;">가족여성과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p> <p>총무과장 귀하</p>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인쇄 : 김태환 / 총무과 (2018-07-30 09:29:54)

울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총무과-14941호(2018.7.20.)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비고
2018-25	총무과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원안동의	

- 붙 임 1. 결과통보서 1부.
2. 조례안 1부. 끝.

감 사 방경수

주무관 민세준 감사팀장 신승화 감사관 방경수 전결 2018. 7. 23.

협조자

시행 감사관-6300 (2018. 7. 23.) 접수 총무과-15117 (2018. 7. 2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msjsj2@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관 리 번 호	2018-25		
자 치 법 규 명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 관 부 서	총무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태환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18. 7. 23.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규제영향분석 심사 결과통보서

인쇄 : 김태환 / 총무과 (2018-07-30 09:30:22)

을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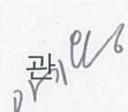
총무과-14919(2018. 7. 19.)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골자

-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안 제5조)
-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 규정(안 제6조 ~ 제7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제10조)
-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4조)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부 규정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김정은 규제개혁팀장 백운학 소통법무관 이기용 2018. 7. 23.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6575 (2018. 7. 23.) 접수 총무과-15118 (2018. 7. 23.)

우 10894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gemgem@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문서관리카드 총무과-15118 1/1